

# 2024년 5월 불법어업 지도 · 단속 사전예고 안내문

## 지도·단속 방향

- ▶ 2024년 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실시(기간: '24. 5. 1. ~ 5. 31.)
- ▶ 부설형 어업(안강망, 각망, 낭장망 등) 무허가조업 및 어구초과부설
- ▶ 실뱀장어안강망 무허가조업, 구획이탈 조업

## 중점 확인사항

[해상] ⇒ 무허가·무면허, 어구·어법, 조업구역, 어선법 위반 등 단속

- ▶ (각망) 허가 유무 확인, 구획이탈 조업, 어구 초과부설 점검
- ▶ (근해·연안개량안강망) 어구 초과부설 및 사용 여부 점검
- ▶ (실뱀장어안강망) 허가 유무 확인, 구획이탈 조업 및 어구 규모 위반 점검
- ▶ (기타업종) 자망, 통발, 복합, 형망 등 허가여부, 어구 규모 및 구성 점검

[육상]

- ▶ (항·포구) 입항, 정박어선 대상으로 어구 부설형 어업(각망, 연안개량안강망, 실뱀장어안강망) 허가여부, 어획물 운반 확인 및 어선 불법 증·개축 점검
- ▶ (수산시장) 전통·수산시장 내 불법어획물(금지체장 위반 등) 유통 점검

※ 5월 금어기 어종: 감성돔, 삼치, 참문어, 대하, 전어, 말쥐치, 주꾸미

## 위반 시 처벌규정

### ▶ 「수산업법」제40조 무허가(허가구역 이탈 조업 등)

\* (사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 1차 어업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

### ▶ 「수산업법」제60조 어구의 규모 위반(불법어구 사용 등)

\* (사법)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 1차 어업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

### ▶ 「수산자원관리법」제24조 불법 어구적재

\* (사법)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 1차 어업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

### ▶ 「수산자원관리법」제25조 유해어법의 금지(불법 활성처리제 사용·보관 등)

\* (사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 1차 어업정지 30일, 2차 어업 취소

### ▶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무면허(면허구역 이탈 양식장 설치, 조업 등)

\* (사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취소

## 불임1

##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관련 주요 규정

###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 9.>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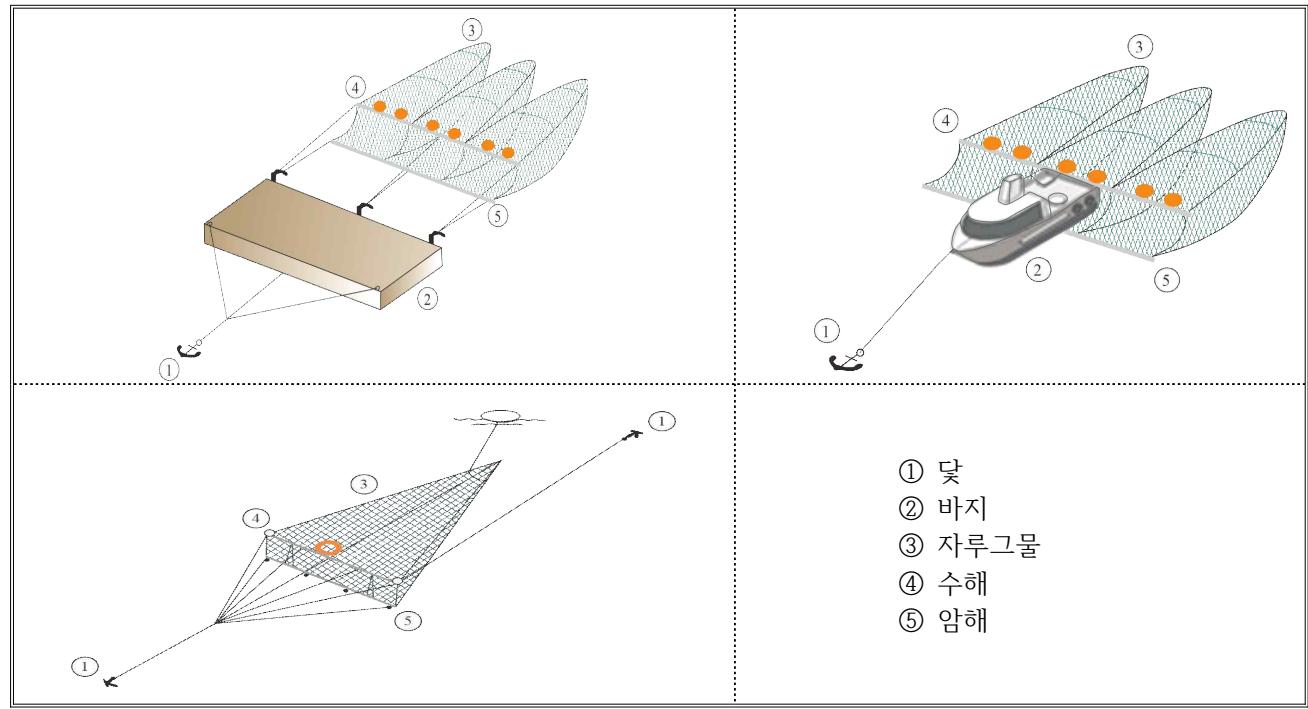
#### 4. 구획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

##### 카. 실뱀장어안강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카-1 및 부도 카-2와 같다.
  - 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또는 자루그물과 바지(barge)로 구성된 어구. 이 경우 바지는 총 길이 16미터 이하의 추진축 및 추진동력 장치가 없는 배 모양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 나) 자루그물 상부와 하부가 수해와 암해로 구성된 어구(수해·암해의 길이는 각각 10미터 이하. 다만, 1통의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수해·암해의 길이는 각각 20미터 이하)
  - 다) 자루그물을 속에 깔때기를 부착한 어구. 다만, 자루그물 속의 깔때기는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1척으로 1)에 적합한 1통 또는 2통의 어구를 허가된 구획 안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어구 속으로 들어간 실뱀장어를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카-1과 같다.
  - 가) 닻으로 고정시킨 바지에 어구를 연결하여 조업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의 선미에 직접 부착하여 조업한다.
  - 나) 자루그물을 들어 올려 실뱀장어를 거두어들인 후 다시 투망한다.
  - 다) 1)에 따른 수해·암해의 길이를 각각 20미터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 1통의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

[부도 카-1]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 불임2

## 근해 ·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관련 주요 규정

###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 9.>

어업별 어구의 규모 · 형태 · 재질 · 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관련)

### 2.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 · 형태 · 재질 · 사용량 및 사용방법

#### 타. 근해안강망어업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표준어구 구성도, 어류분류망 구성도는 각각 부도 타-1부터 부도 타-3까지와 같다.

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나)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는 뜰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며, 양쪽 측면에는 범포(帆布: 뜻천)를 달아 그물이 상하 또는 좌우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다) 세망(細網)으로 된 자루그물 내부에 어류를 분류하는 그물을 여러 개 부착할 경우 부착한 어류 분류망에는 어류 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그물코 크기는 별표 8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라) 15통 이내의 어구(어구용 닻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 경기도 및 충청남도 해역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20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을 수 있다.

### 3. 연안어업의 어구의 규모 · 형태 · 재질 · 사용량 및 사용방법

#### 가. 연안개량안강망어업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가-1 및 부도 가-2와 같다.

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나)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는 뜰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며, 양쪽 측면에는 범포를 달아 그물이 수직과 좌우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다만, 연안안강망(낭장망 또는 주목망)어업에서 개량안강망어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범포를 대신하여 말뚝 또는 뼈침대를 전개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자루그물 내부에 어류를 분류하는 그물을 여러 개 부착할 경우, 부착한 어류 분류망에는 어류 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그물코의 크기는 별표 8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라) 5통 이내의 어구(어구용 닻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가-3과 같다.

가) 자루그물을 해저에 닻으로 고정 부설하여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다만, 연안안강망(낭장망, 주목망)어업에서 개량안강망어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개 이내에서 부설할 수 있다.

나) 어구 고정용 닻, 자루그물, 범포(쫑대 또는 뼈침대)를 투하한 뒤 짐줄,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투망의 역순으로 양망한다.

## 불임3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법률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前)

개정 후(後)



기상특보 발효 시

(기존)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제한



(개정)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 및 조업제한

▶ 조치 위반시 어업허가 취소 또는 3개월 이내의 어업허가 정지



제10조(출항 등의 제한)

① 신고기관의 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 〈②항, ③항 생략〉 (시행 2022.10.18.)



구명조끼 등의 착용



(기존) 태풍·풍랑특보, 예비특보 발효 중 일부 노출된 김판에 있는 승선원은 구명조끼 착용

(개정) 기존 + 승선인원이 소규모인 어선의 승선원은 구명조끼 상시착용(2인 이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시행 2025.10.19.)

▶ 선장에게도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할 의무 부과(과태료 300만원 이하)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 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항 생략〉



(기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자

(개정) 기존 +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선장,



▶ 구명조끼 착용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위반 90, 2차 위반 150, 3차 위반 이상 300만원)



| 규정추가 |

제32조(과태료)

- ① (생 락)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 10. 18.)  
1. ~ 3. (생 락)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자



2025년 10월 19일부터

소규모 조업어선은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공포 '22.10.18. 제24조 및 제32조 공포 3년 후 시행)에 따라 '25.10.19부터는 구명조끼·구명의 의무착용이 확대되고, 선장에게도 승선자의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할 책임이 부과(과태료 300만원 이하)됩니다.

## 붙임4

## 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포스터

#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보호 및 국내·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5월 한 달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어업 집중단속 실시

2024. 5. 1.~5. 31.



### 중점단속대상

무허가	무허가무연허, 미승인 2종 이상 자망조업 등
조업구역	중·대형저인양 조업 금지구역 침범 등
포획금지·체장	대개(암컷·체장미달), 살모징어·감성돔 등 불법포획
어구위반	소형선망, 잠수기 불법어구, 어구 초과 부설(자망·통발) 등
허가제한	채낚기(광력위반), 혼획위반, 동해구트루(선미 경사로) 등
어선위반	어선법위반 불법 증개축,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미수리 등

### 공통

연근해 국내어선 어업별·유형별·지역별 및  
외국어선 무허가 불법어구 등 집중단속

### 단속기관

- 주 관 해양수산부(동·서·남해어업관리단)
- 참 여 지자체, 수협중앙회
- 협 조 법무부, 해양경찰청

신고  
및  
문의

- 대표전화: 국번 없이 1588-5119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http://www.mof.go.kr)
- 지방자치단체: 불법어업단속 담당부서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 동해단: 051-410-1030-1
- 서해단: 061-240-7970, 7974
- 남해단: 064-780-2422, 2434

## 청렴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서해어업관리단장 박천일입니다.

서해어업관리단 전 직원은 지속 가능한 어업실현을 목표로 풍요롭고 활기찬 서해바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어업인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단은 어업을 관리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어느 기관보다 높은 청렴도가 요구되며,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청렴은 부패행위를 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적극적인 의미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공직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학연·지연·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등 청렴도를 저해하는 행동은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공정을 묵인하지는 않았는지, 더욱 엄정하게 점검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부조리를 경험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단 신고센터(061-240-792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이 청정 서해바다를 앞장서 만들어 나가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업인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 한 해도 풍어와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해어업관리단장 박 천 일

온라인 신고

홈페이지(<https://westship.mof.go.kr>) 접속 - 국민마당 - 신고

전화 신고

서해어업관리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061-240-7924)